

장기요양급여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10068호에 따름]

[입소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을 가진 자로서,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등급~5등급 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시설급여로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소계약]

- 입소자(보호자)는 입소하기 전 입소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입소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계약 목적,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입소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지,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입소비용]

- 월이용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당해연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분 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시설급여) (2019. 1. 1. 기준)	장기요양 1등급	69,150
	장기요양 2등급	64,170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59,170

-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 등 급	총 본인부담금액 (30일 기준)			
	기초수급 대상자	일반 (20% 부담)	60% 감경 (8% 부담)	40% 감경 (12% 부담)
1등급	없음	414,900원	165,960원	248,940원
2등급	없음	385,020원	154,000원	231,010원
3~5등급	없음	355,020원	142,000원	213,010원

- 다음 각 목에 대한 기타 부대비용(비급여)은 다음과 같다.

비급여 항목	산출 내역	
식사재료비 (1일 기준)	- 식재료비 : 2,500원(1식) * 3식 = 7,500원 - 간 식 비 : 700원(1회) * 1회 = 700원 - 경관영양식 : 실비 ※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생계급여 보조금)로 가름함.	
상급침실이용료	없음	
이미용비	자원봉사 활용 시	무료
	자원봉사자 미활용 시	실비 부담
기타 본인부담 비용	- 입소자나 보호자 요청 여가활동 (안마치료, 수중 치료, 도자기 빚기, 외식 등) - 개인적 문화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화감상, 쇼핑, 음악회, 종교활동 등) - 병원 입원 시 발생 비용 및 간병비용 -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병의원 진료비 및 약값 등 - 입소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생활용품 - 기타 개인 기호도 음식, 간식 등	

- 외박이나 병원입원 시 최대 10일까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 월이용료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요양원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요양원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장기요양명세서)을 수급자(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행 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인정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 및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이때, 계약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시설급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입소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입소대상자를 대신하여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기본, 특별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일상 생활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생관리 : 청소, 의류세탁 등 - 신체청결 : 목욕, 이·미용관리 등 - 영양급식 :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한 맞춤 영양서비스 제공 등
건강 관리 및 의료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관리 : 매일 간호사 / 월2회 이상 촉탁의사 진료, 예방접종, 건강검진, 산책 등 - 물리 또는 작업치료 : 의사 처방 등에 따른 물리(작업)치료 등
사회재활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훈련 : 생신잔치, 민속놀이, 관광지 및 야외나들이, 명절행사 등 - 사회적응훈련 : 오일장 나들이, 지역 행사 참여 하기 등
정서적 관리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행사, 미술치료, 음악치료, 영화감상, 원예치료 등

[계약당사자의 의무]

- 요양원과 입소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항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이는 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와의 각종 서비스와 의무사항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어 서로 지킴을 목적으로 한다.
- 요양원의 의무
 - ① 입소기간 동안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나 간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 긴급한 사항일 시에는 선조치 후에 연락을 취한다.)
 -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16호 서식]에 따른 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입소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한다.
 -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 ③ 시설에서 개인이 애완동물 사육을 할 수 없다.
 - ④ 보호자 인적사항 등이 변동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시설 규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장기부재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이행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정하여 요양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 간병, 입·퇴원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 ⑥ 그 밖에 시설 규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입소자의 권리

-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③ 입소자는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⑦ 입소자는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지]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요양원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로 퇴소를 원할 때. 이 때, 반드시 사전에 이에 대한 사항을 요양원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도 있다.
- ② 입소자가 사망 하였을 때.
- ③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④ 2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⑤ 시설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⑦ 10일을 초과하여 입원을 하였을 때(이때, 최초 입원일부터 10일간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요양원의 입소자 정원수를 감안하여 퇴원하더라도 귀원 시기를 요양원에서

조정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⑧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시설관리]

- 요양원은 항상 쾌적한 환경과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소자의 안전과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 요양원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입소자의 생활 공간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요양원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생활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 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
- 하절기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 동절기에는 난방시설을 사전에 점검, 보수 하는 등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입소자 및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시설관리에 대한 사항은 규정을 따로 정하여 관리 한다.

[건강관리]

- 요양원은 입소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와 종사자들에게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 요양원은 입소 시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입소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입소자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요양원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등 건강관리 활동과 낙상방지 등을 하여야 한다.
- 요양원은 입소자가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건강 이상 시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요양원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설물 배상]

- 입소자는 요양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입소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배상 하여야 한다.
-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여 배상을 요구할 경우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한 보호]

-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②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써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입소자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⑤ 합숙용(2인실 이상)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 한다. (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호스피스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특별서비스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입소자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④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입소자나 가족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④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촉탁의사 또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③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④ 촉탁의 또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입소자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정기 병원진료에 대한 처리절차
 -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하여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토록 한다.
 -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를 하는 때에는 진료의사가 입소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에 대한 처리절차
 -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요양원은 입소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위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요양원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와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요양원은 협의에 따른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위 사항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요양원은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시에 따라 장례를 집행할 수 있다.
-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에 대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입소자 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입소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입소자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 한다.

-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말미암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기타 사유로 입소자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임종 및 장례]

-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습권자인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법에서 제시한 비용으로 충당하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는 보호자가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장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요양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요양원은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 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 할 수 있다. 직계혈족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 잔여금품은 민법에 따라 처리한다.
- 요양원은 무연고 입소자의 사망 후, 행정기관에 사망 1개월 이내에 제반 관련 서식에 의거, 사망사실을 보고하여 퇴소처리를 하여야 한다.

[생활실의 배정 및 변경]

- 입소자의 생활실 배정은 입소순서, 장기요양등급, 종교, 성별,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요양원이 조정할 수 있다.
- 요양원이 입소중인 자의 생활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이유에 대해서 입소자·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어서 실행한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 요양원은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요양원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입소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입소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 입소자는 요양원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요양원은 입소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요양원은 입소자의 안전과 보호관리를 위하여 CCTV 설치할 수 있으며,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기준하여 입소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에 한정하여 활용 한다.

[기록 및 공개]

- 입소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입소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다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시에는 그에 따른다.
 - ① 시설 종사자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
 -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
 - ③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
 - ④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 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입증되었을 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 등은 요양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② 요양원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⑤ 보호자에게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비협조로 인한 사고, 사망하였을 때.

예천노인전문요양원